

심 사 보 고 서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사 회 산 업 위 원 회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의원입니다.

구미시 의회 제 13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시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
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불결·불량한 화장실에 대
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행정제제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시설기
준을 갖추고 전담 관리인의 배치,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초대 의회때인 지난 6월 구미시의회 제 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유료화장실의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유료 화장실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끝에 보류된 바 있었던 사안으로서 당 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실상 유료 화장실의 요건을 구비한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유료화로 할 경우 시장, 역, 버스터미널 등 특정 위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시설 소유자에게만 수익이 되며, 서민들 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공중화장실의 유료화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조례 (안) 중 공중 화장실의 유료화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안) 과 같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 년월일	1995. 12. (제 회)

의 결
사 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 출 자	사회산업위원장
제출년월일	1995. 12.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1995. 12.

제안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의결 주문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수정 이유

공중화장실의 유료화는 시기 상조라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및 제16조, 제17조와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장, 조의 조정 및 그 외 유료화장실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3. 수정골자

- 조례(안) '제 5장 유료화장실 승인' 과 제 16조 및 제 17조를 삭제하고, '제 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을 '제 5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으로 하며 '제 18조' 를 '제 16조' 로 '제 19조' 를 '제 17조' 로 한다.
- 조례(안) 제18조 제1항중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로 한다.
- 조례(안) 제18조 제2항중 '제6호' 를 '제4호' 로, '제7호' 를 '제5호' 로 한다.
- 조례(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 조례(안) 【별표 제1호】 중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에 '(제18조 제3항 관련)'을 '(제16조 제3항 관련)' 으로 하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중 5호 란을 삭제한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 제 5장 유료화장실 승인 ' 과 제 16조 및 제 17조 를 삭제하고,
' 제 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을 ' 제 5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으로 하며
' 제 18조 ' 를 ' 제 16조 ' 로 ' 제 19조 ' 를 ' 제 17조 ' 로 한다.
- 조례(안) 제18조 제1항중 '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
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 를 '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로 한다.
- 조례(안) 제 18조 제 2항중 '제 6호' 를 '제 4호' 로, '제 7호' 를 '제5호' 로
한다.
- 조례(안) 부칙 제4조 를 삭제한다.
- 조례(안) 【별표 제 1호】중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에 ' (제18조 제3항 관련) ' 을
' (제16조 제3항 관련) ' 으로 하며, 2. 개별 기준 위반 사항중 5호 란을 삭제
한다.

수정 (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제 5장 유료화장실 승인</u>		(삭제)	
	<u>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 ①시장은</u>		(삭제)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u>			
	<u>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u>			
	<u>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u>			
	<u>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u>			
	<u>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u>			
	<u>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u>			
	<u>서 제외된다.</u>			
	<u>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u>		(삭제)	
	<u>적합할 것.</u>			
	<u>2. 전담관리인을 둘 것.</u>		(삭제)	
	<u>3. 화장지, 비누, 수건 (또는 에어타월기</u>		(삭제)	
	<u>)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u>		(삭제)	
	<u>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u>			
	<u>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u>			
	<u>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u>			
	<u>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u>			
	<u>를 승인하고, 별지 제 5호 서식의 승</u>			
	<u>인서를 교부한다.</u>			
	<u>③유료 화장실의 1회 사용료는 100원</u>		(삭제)	
	<u>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u>			
	<u>여야 한다.</u>			

원	안	수	정	안
제17조 (준수 사항) ①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삭제)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삭제)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 할 것.		(삭제)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삭제)		
<u>제 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u>				<u>제 5장 과태료 부과징수등</u>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 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 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②..... 제4호..... 제5호.		

원	안	수	정	안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④ 생략		④ 원안과 같음		
제19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7조 (시행 규칙).....		
부	칙	부	칙	
제1조 생략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원안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원안과 같음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삭제)		
이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 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 수정 (안) ”

과태료 부과기준 (제16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기 준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할때	제5조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 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기 준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할때	제5조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 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7조 (제2호내 지제4호)	20	30	50